

2017년 제3회 공개경쟁채용 공고

「시민을 미소 짓게 만드는 으뜸공기업」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을 함께 만들어 가실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17년 8월 23일

양주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

I 채용개요

1. 채용규모 및 인원

채용직급 및 분야	채용인원	수행업무	비고 (배치예정부서)
일반직6급 (사무)	1명	체육시설운영기획 및 유관단체관리	체육관광팀
일반직7급 (건축)	1명	청사관리	기획총무팀
일반직8급 (사무)	3명	일반행정 및 사무보조	각 부서
총 계	5명		

※ 조직개편 및 내부전보계획 등에 따라 채용 후 다른 업무로 전보배치 될 수 있음.

※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능함.

2. 전형일정 및 절차

가. 전형일정

구분	일 정	주 요 내 용
원 서 접 수	2017.8.30.(수) ~ 9.1.(금)	▪ 문화예술회관 1층 기획총무팀
1 차 (필 기) 시 험	2017.9.2.(토)	▪ 해당 고사장
필기시험 합격자 발표	2017.9.4.(월)	▪ 공단 홈페이지
2 차 (면 접) 시 험	2017.9.7.(목)	▪ 문화예술회관 직원 회의실
최종합격자 발표	2017.9.7.(목)	▪ 공단 홈페이지
임 용	2017.9.18.(월)	

나. 채용분야별 전형절차 및 배점 비율

채용분야	전형	필기시험	서류전형	면접시험		비고
				PT발표	면접	
일반직6급 (사무)			○ (60%)	○ (20%)	○ (20%)	
일반직7급 (건축)	○ (60%)			○ (20%)	○ (20%)	
일반직8급 (사무)	○ (60%)			○ (20%)	○ (20%)	

3. 응시자격

가. 공통사항

구 분	자격제한내용
연 령	▪ 18세 이상 ~ 60세 이하 (1958.1.1. ~ 1999.12.31. 출생자)
병 역	▪ 남자의 경우,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※ 현역복무 중인 자는 응시는 가능하나,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역 예정자
거 주 지	▪ 공고일 1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또는 경기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
응시제한	▪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2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※ 세부내역 : 붙임 참조

나. 경력 및 자격등 제한사항

구 분	수행업무	자격제한내용
일반직 6급 (사무)	체육시설운영기획 및 유관단체관리	▪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- 공무원 8급 이상 경력자 또는 공무원 9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- 공공기관(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합당한 기관)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자 - 체육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 사무(행정·예산·회계·프로그램 개발 등)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
일반직 7급 (건축)	청사관리	▪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에서 중직무분야 중 「건축」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

II 시험단계별 안내사항

1. 응시원서 접수

가. 접수기간: 2017.8.30.(수) ~ 9.1.(금) 09:00~18:00 (3일간)

나. 접수방법: 접수장소에 직접 또는 대리제출

다. 접 수 처: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618번길 303 양주문화예술회관 기획총무팀 (방문접수만 가능)

라. 제출서류

- 응시원서 1부
- 이력서 1부
- 자기소개서 1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
- 직무수행계획서 1부 (일반6급 응시자에 한함)

※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능함.

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에 사용하는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얼굴 정면을 촬영한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고,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은 본인의 사진을 파일첨부 후 출력하거나, 출력 후 붙여서 제출

※ 관련 서류는 양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(www.yjfmco.or.kr)에서 내려받아 사용

2. 필기시험

가. 필기시험 일정

- 일 시: 2017.9.2.(토) 10:00
- 장 소: 조양중학교 (접수인원에 따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)
- 대 상: 응시자 전원
- 합격자 발표: 2017.9.4.(월)

※ 합격자 발표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나. 시험과목

구 분	공 통 과 목	개 별 과 목
일반직 7급 (건축)	일반상식 (객관식 25문항)	건축분야 (건축 산업기사 상당 수준) (객관식 25문항)
일반직 8급 (사무)		행정학 (행정학개론 수준) (객관식 25문항)

다. 합격기준 및 결과활용

- 필기시험 각 과목별 40% 이상 득점자(가산점 포함) 및 전과목 총점이 만점의 60% 이상인 응시자(가산점 포함) 중 고득점자순으로 각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필기시험 합격인원으로 함

라. 가산점

구 분	세 분	가산점수	비 고
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취업보호대상자 광주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제20조의한 취업지원대상자 	만점의 10% 가산	
정보처리분야 자격증소지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컴퓨터활용능력_1급 전산회계운용사_2급 	만점의 2.0% 가산	1인 1종 이상 인 경우에는 최고가산점 1종만 적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컴퓨터활용능력_2급 전산세무회계_2급 디지털정보활용능력_고급 PC활용능력(PCT)_1급 정보기술자격(ITQ)_A급 E-test Professionals_1급 	만점의 1.5% 가산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워드프로세서_1급 디지털정보활용능력_중급 PC활용능력(PCT)_2급 정보기술자격(ITQ)_B급 E-test Professionals_2급 	만점의 1.0% 가산	
건축분야 자격 소지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[별표2] 중 중직무 분야 “건축”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소지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 술 사 - 만점의 3.0% 가산 기 사 - 만점의 2.0% 가산 	일반직 7급(건축)에만 해당

마. 기타사항: 일반6급(사무)의 경우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한 서류평가로 대체

바. 결과활용: 최종합격자 선발 시 60% 반영

3. 서류제출

가. 제출대상: 필기시험 합격자

나. 제출기한: 2017.9.7.(목) 면접시험 시행 전까지

다. 제출방법: 직접 또는 대리제출

라. 제출처: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618번길 303 양주문화예술회관 기획총무팀

마. 유의사항: 필기시험 합격취소 기준

- 서류 미제출자
- 응시원서 기재사항과 내용이 다르거나 증빙이 안되는 경우
- 응시원서에 가점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

바. 제출서류

구 분	제출내용	용도	비고 (제출대상)
주민등록초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공고일(2017.8.23.) 이후 발행분, 주소변동사항 포함 ▪ 병역사항 기재 포함 (초본에 병역사항이 포함되지 않을 시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) 	주소지 확인 병역여부 확인	전 응시자
자격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사항 확인서 	가점부여 확인	해당자
경력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관련분야 경력 증명서 	응시자격 확인	해당자
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	가점부여 확인	해당자
군복무확인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전역예정일 기재 (각 소속부대장 발행) 	응시자격 확인	전역예정자
기타 증빙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타 본인이 작성한 응시원서 내용의 증빙이 필요할 경우 제출 		해당자

4. 면접시험

가. 대상자: 필기시험 합격자

나. 일정: 2017.9.7.(목) 10:00

다. 장소: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618번길 303 양주문화예술회관 직원회의실

라. 추진방법: 개인별 PT발표면접 및 그룹별 질의응답면접 실시

- PT면접: 주제에 따라 8분 내외로 작성된 PPT자료 발표
- 질의응답면접: 3인 1조 질의응답 실시

마. 면접시험 주요내용

채용분야	PT주제
일반직 6급 (사무)	직무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한 체육시설물 관리사업계획
일반직 7급 (건축)	원거리로 배치된 각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
일반직 8급 (사무)	아래의 각 주제 중 택1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공업의 비효율적인 사업구조(또는 조직문화)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■ 양주시시설관리공단 비전달성을 위한 사회적역할 완수 방안 ■ 자신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면 이것만은 꼭 해보고 싶다.

바. 주요평가요소

-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
- 전문지식과 응용능력
-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
- 창의력, 의지력, 기타 발전가능성
- 태도 및 성실성 등

사. 결과활용: 최종합격자 발표 시 40% 반영 (PT발표 20%, 질의응답 20%)

아. 가산점

구 분	세 분	가산점수	비 고
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취업보호대상자 ▪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취업보호대상자 ▪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	만점의 10% 가산	

5. 최종합격자 발표

가. 발 표 일: 2017.9.7.(목) 17:00

나. 최종합격자 선정방법

- 일반직6급(사무): 직무수행계획서평가 60% + 면접시험 40%
- 그 외: 필기시험 60% + 면접시험 40%

다. 기타사항: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
라. 예비합격자 운용: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거나, 합격자 중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분야별 2명을 성적순으로 예비합격자로 선발 (예비합격자는 임용일부터 3개월까지만 유효)

Ⅲ

기타 근무조건 및 유의사항 등

1. 근무조건

가. 보수기준

- 일반6급: 연29,920천원 (5호봉 기준)
- 일반7급: 연27,280천원 (5호봉 기준)
- 일반8급: 연24,850천원 (5호봉 기준)
- ※ 평가급(성과급), 법정수당(시간외수당 등), 퇴직급여 별도

나. 근무시간 및 신분보장

-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40시간 근무 (근무시간 및 요일 등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운영)
- 정년(만60세) 보장 (수습기간 종료 후)

2. 유의사항

가.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, 연락불능, 자격 미비자,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
나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.

다. 위의 공고사항 중 선발예정인원, 응시자격, 시험시행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.

라. 최종합격된 자의 경우, 수습기간 후 정식 임용하되, 수습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고 반기별 평가를 통해 수습기간을 조기 종료 후 임용 될 수 있습니다.

마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시설관리공단 기획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(전화/031-828-9707)

결격사유

- 미성년자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직전 직장 또는 공공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직전 직장 또는 공공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